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기준 발전방안

유병태<sup>†</sup>

한국교통대학과 안전공학과

(flyduck@ut.ac.kr<sup>†</sup>)

정부는 2015년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도 강화하였다. 하지만, 일부 기술기준의 경우 산업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이러한 법적 기준을 개정하여 취급시설 기술기준의 합리화를 마련하였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특성상 업종, 취급공정, 취급물질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기술기준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기준에 선진 신기술을 적용하고 업종별, 물질별 특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합리적 기술기준 마련을 모색하고자 한다.